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5088 제출연월일: 2024. 10. 31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 처리된 청구 등을 또다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유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 제목 "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"를 "정보공개 청 구권자의 범위·의무와 공공기관의 의무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"(정보공개 청구권자)"를 "(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와의무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(이하 "청구인"이라 한다)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(이하 "청구인"이라 한다)는"을 "청구인은"으로 한다.

제11조제5항제2호 중 "진정"을 "건의"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한다"를 "하되, 그 후 접수되는 청구가 또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청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된 경우: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

- 4.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청구로서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인 청구(이송받아 처리 중인 청구를 포함한다)와 동일한 청구인 경우: 동일한 청구를 이미 접수하거나 이송받아 처리 중임을 안내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1조의3(부당한 청구 등의 처리)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제3항의 부당하 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.
 - 1. 실제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가 없이 정보공개 제도 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
 - 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
 - 3.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 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 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 따른 비용및 그 징수"를 "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·징수·감면 ·예납 및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유예"로 한다.

- ③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1.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후 그 청구를 취하한 횟수가 2회 이상인 청구인
- 2.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횟수가 2회 이상 인 청구인
-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제11조 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보 공개 등에 드는 비용의 예납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정보공 개 청구를 취하한 횟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 한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<u>정보공개 청구권자와</u>	제2장 <u>정보공개 청구권자의</u>
공공기관의 의무	범위ㆍ의무와 공공기관의 의무
제5조(정보공개 청구권자) ①・②	제5조(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
(생 략)	<u>와 의무)</u>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
	(이하 "청구인"이라 한다)는 공
	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
	<u>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</u>
	<u>된다.</u>
제10조(정보공개의 청구방법) ①	제10조(정보공개의 청구방법) ①
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(이	<u>청구인은</u>
<u>하 "청구인"이라 한다)는</u> 해당	
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	
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	
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	
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	
를 청구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정보공개 여부의 결정) ①	제11조(정보공개 여부의 결정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	⑤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원으로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공개 청구의 내용이 <u>진정</u>・ 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 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의2(반복 청구 등의 처리)
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,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・관련성,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수 있다.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.

1. (현행과 같음)	
2	거의
	<u></u>
제11조의2(반복 청구 등의	처리)
①	
	<u>하되,</u>
그 후 접수되는 청구가	<u> 또다시</u>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게 해당
하면 그 청구에 대해서는	는 알리

1. • 2. (생략)

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, 해당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
<u>다</u> 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
·.
1 0 /처케키 가이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이미 동일한 청구가 된 경우: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청구가 처리 중임을 안내
- 4.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
 받은 청구로서 이미 접수되어
 처리 중인 청구(이송받아 처리 중인 청구를 포함한다)와
 동일한 청구인 경우: 동일한
 청구를 이미 접수하거나 이송
 받아 처리 중임을 안내

제11조의3(부당한 청구 등의 처

리)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 제3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.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과 그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.
- 1. 실제로 해당 정보를 취득하 거나 활용할 의사가 없이 정 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 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경우
- 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
- 3.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

제17조(비용 부담) ①·② (생략) <신 설> 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필 요한 사항은 국회규칙·대법원 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17조(비용 부담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

- ③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후
 그 청구를 취하한 횟수가 2회
 이상인 청구인
- 2.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횟수가2회 이상인 청구인
-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청구인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

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· 대법원규칙 · 헌법재판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・징수・감면・예 납 및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유예 ------